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
일부 개정령안 협회 의견

개정안	협회의견	사유
제26조의2(정관)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목적 2. 명칭 3. 사업 4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.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.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7.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8. 총회·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.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.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2조 (없음)	제26조의2(정관)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목적 2. 명칭 3. 사업 4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.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.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7.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8.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부칙 제2조 동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 4까지의 기준에 따라 설립 요청되어 승인된 협회는 동 시행령 시행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	안전진단전문협회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단체이며, 현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가 1,325개로서 회원 수가 수만~수십만 명이 되는 다른 단체와 같이 대의원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. 법령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단체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.